

#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2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국립공원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시설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(산림청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 조정한 금액)와 유사한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.

4. 주요 골자

- 시설사용료의 상향 조정 (별 첨)

## 5. 검토 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, 충청북도내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국립공원 및 국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고, 휴양림과 각종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,

주차료 및 각종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, 강의실, 단체숙소, 샤워장의 사용료를 새로이 징수코자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
자연휴양림과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,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## 6. 첨 부

-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